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55622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지원

2.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피고, 항소인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장호

나. 주식회사 E

변론 종결2022. 4. 22.

판결 선고2022. 5.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556220 판결(일부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0.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은 799,743,012원임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0.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은 항소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이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관리인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민달기

판사김용민